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디오물소극장업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법정형 하향 조정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70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6. 28.

다. 회 부 일: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 12. (생략) <u><신설></u>	제95조(벌칙)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2조제3호를 ----- ----- ----- 11. · 12.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7조(양벌규정) ----- ----- ----- ---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2. 검토의견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각종 경제 관련 법률에 규정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여 비범죄화하거나 그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¹⁾ 그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차 과제로 32개의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고, 2023년 2차 과제로 108개 규정의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개정안은 2023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²⁾에 따라,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비디오물소극장업³⁾ 청소년 출입시간⁴⁾ 위반죄의

1) 기획재정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보도자료, 2022. 8. 26.

2) 3차 개선과제의 목록은 [참고] 자료 참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첫째,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형벌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행위⁵⁾는 ▲ 영화 상영등급변조, ▲ 영업정지명령 미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이행, ▲ 불법비디오물 제작·유통 등,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미등록, ▲ 비디오물감상실 등 내 주류 판매·제공, ▲ 비디오물감상실 등 내 접대부 고용·알선 등으로, 이들 행위보다는 ‘비디오물소극장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여지가 있음.⁶⁾

둘째, 다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⁷⁾의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오락실)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개정안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376

6)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 대한 것이므로, 이 경우보다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음.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8)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노래연습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고 덜 폐쇄적인 공간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총 46개)

연번	법률명	구성요건	개선방안
1. 생활밀착형 규정(14개 과제)			
1	폐기물관리법 §66.4의4(§18③ 관련)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백만원 (거짓 입력 등은 유지)
2	대기환경보전법 §90.4의3(§39① 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거짓 기록 등은 유지)
3~4	정보통신공사업법 §74.3(§17①·1, 2 관련)	공사업의 양도,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5~6	영화비디오법 §94.2, §95.10 (§29⑤, §62.2 관련)	(§94.2)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95.10)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형량조정> (§94.2) 2년, 2천만원 (§95.10) 1년, 1천만원
7	사회복지사업법 §55(§13②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과태료 3백만원
8	장애인복지법 §87.6(§59②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	<선행징제재-후형벌>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9~10	항만법 §110.1(§12⑤ 단서, §58⑤ 단서 관련)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선행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11~12	옥외광고물법 §18②·1, 2(§3, §3의2 관련)	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13~14	하천법 §96.3, §96.8 (§75③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	<선행징제재-후형벌>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15개 과제)			
15~20	자본시장법 §446.16, §446.54 (§91①, §186②, §113①, §280③, §338, §356 관련)	(§446.16)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446.54)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선행징제재-후형벌> (제16호)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행정제재 전환> (제54호)과태료 1억원
21~22	자유무역지역법 §61.3, §61.5 (§34①, §35③, §38③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23	마리나항만법 §38-2(§18④ 관련)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시설 등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등록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4	항만법 §110-3(§38① 관련)	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 실시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5	항만운송사업법 §30-2(§26의3①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2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47②·2(§17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7~28	하천법 §95-1, §95-6 (§14②, §39② 관련)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9	물류시설법 §65①·4의2(§21의2① 관련)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43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9① 관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②·1(§7② 관련)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14①단서, §87, §90 관련)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36②, §37② 관련)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년,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4. 법률 단위 검토과제(7개 과제)			
40~42	선원법 §170-3, §170-4 (§55①, ⑤, §62⑤ 관련)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형량조정>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3년, 3천만원)
43~46	채무자회생법 §653(§319, §320, §322, §578의6 관련)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